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33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진중오 · 서천호 · 고동진
김용태 · 김상훈 · 조정태
김소희 · 박수민 · 박정하
이종배 · 이만희 · 권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

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구매목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 ----- ----- ----- ----- ----- ----- ----- ----- ----- ----- .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 ----- ----- ----- ----- -----

